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지향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송경택,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증진계획의 시행 의무를 명시하여 사업의 실행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추가하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실태조사의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반영을 의무화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나.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 체계 구축 현황 및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함(안 제7조 제2의2, 5의2 신설).
- 다.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의무화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5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3. ~ 5. (생략)</p> <p><u><신 설></u></p>	<p>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 ----- ----- ----- 수립·시행-----.</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7조(실태조사)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u>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u></p> <p>3. ~ 5. (현행과 같음)</p> <p>5의2. <u>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u></p>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실태조사)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실태조사)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7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여 사업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다만, 참고자료로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첨부함(붙임1)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붙임 1]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1 기본 현황

사업개요

회 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기간 2022.03 ~ 2022.12		
사업내용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시민 모두가 편리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당해년도)	150,000천원	(국비)	(서비)1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김인숙 02-2133-2410	손형권 02-2133-2412	김태림 02-2133-2416

※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예산 설명

예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2021예산액 (A)	2022예산액 (B)	증감 (B-A)	(B-A)*100/A
				(x-)
계	(x-) 0	(x-) 150,000	(x-) 150,000	(x-) 100
연구용역비	(x-) 0	(x-) 150,000	(x-) 150,000	(x-) 100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2년 예산내역		
연구용역비	○ 종합계획 용역비	=	150,000천원

과목구분	2022년 예산내역
	150,000,000원

3 사업 설명

□ 사업목적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시민 모두가 편리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사업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3월~12월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보행정책과
- 추진방법 : 학술용역 수행
- 사업의 주요내용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조사·분석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계획 수립
 - 투자비용 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수립

□ 2022년도 추진일정

(단위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50,000	
방침 수립	2022 01~2022 01		
용역 수행	2022 03~2022 12	150,000	학술용역 수행